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86 공갈, 공갈미수
피 고 인 A
검 사 박진우(기소), 김동영(공판)
판 결 선 고 2025.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186』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4. 9. 11.경 SNS '뉴친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연락해온 사이로, 피고인은 'C'라는 이름의 18세 여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소개한 다음 '나중에 조건만남을 진행하고, 우선 오늘은 성관계 영상 등을 보내줄테니 구매대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으



며, 피해자는 '군인이라서 향후 휴가를 나가 조건만남에 응할 생각이 있으나, 영상은 구매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던 것처럼 위 'C'의 부친이 피해자를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겁을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24. 9. 11. 17:5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북포항북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입니다.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 : 2024. 9. 12. 17:00, 장소 : 포항북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준비물 : 신분증 및 제출자료'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2분 안에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 아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9. 13. 08: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4. 9. 13. 11: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빠가 일단 고소는 취하하였으나,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선임비용의 33%인 220만 원을 네가 부담하여야 한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빠가 사건을 계속 진



행하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20만 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피의자와의 문자 대화내역, 고소 대리인위임장,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송금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상세조회, 수사보고서(대화내역 보강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유사 수법 공갈죄로 약식 기소되었음에도 본건 범행),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갈 범행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미성년자 성범죄라는 명목으로 공갈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2024. 5. 19. 마찬가지로 범행 수법으로 공갈범행을 저질러 2024. 8. 14.자로 기소된 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는데,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자살을 하겠다는 등 연탄을 사러가고 있다는 등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도박의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갈취금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3회의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_____



별지

범 죄 일 랫 표

순번	범행 일시	협박 내용	피해금	교부 방법
1	2024. 9. 11. 20:17	2분 안에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취소하지 않고 사건을 계속 진행하겠다. 아빠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보내라.	3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음
2	2024. 9. 11. 20:52	20만 원을 보내주면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사건을 취소하도록 하겠다.	20만 원	상동
3	2024. 9. 12. 09:31	합의금을 더 주면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사건을 취소하도록 하겠다. 신고한 내용은 미성년자성착취이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보내라.	100만 원	상동
4	2024. 9. 13. 08:51	합의금을 더 주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보내라.	93만 원	상동
5	2024. 9. 13. 08:59	합의를 하려면 7만 원을 더 보내라.	7만 원	상동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음				